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319호) 개정·공포 알림

1. 「의료기기법」 (법률 제18319호, '21. 7. 20. 공포)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2.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 보험 등 가입 의무화와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319호)이 2021.7.20.자로 불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된 법률안은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319호)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사단법인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사단법인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공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사단법인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장, 사단법인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장, 사단법인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장, 사단법인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재)한국의료기기평가원이사장,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이사장

주무관 서아림 사무관 대결 2021. 7. 20. 정재용 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의료기기정책과-6325 (2021. 7. 20.)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761 팩스번호 043-719-3750 / woodsseo@korea.kr / 대국민 공개